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없음 なし	발급 수수료 発給手数料	열람 수수료 閲覧手数料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件につき300ウォン。但し、電子民願窓 口からの申請は無料です。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件につき100ウォン。但し、電子民願窓 口からの申請は無料です。

유의 사항
留意事項

-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申請書の内容を全て記入しないと、自動車登録原簿謄本（抄本）の発給及び閲覧ができません。但し、自動車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又は使用本拠地は必ずしも記入する必要がなく、その場合は、自動車登録原簿謄本（抄本）の発給又は閲覧時に自動車所有者の個人情報を保護するために、自動車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の下6桁及び使用本拠地の住所を表記しません。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 自動車登録原簿の閲覧は「自動車登録規則」第12条第2項の前段に基づき、登録機関の担当公務員の前で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自動車の所有者本人が自動車登録原簿謄本（抄本）の発給・閲覧を申請する場合、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又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等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できる書類を提示するだけでも、自動車登録原簿謄本（抄本）の発給・閲覧が可能です。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